

서울고등법원 2018. 1. 26 선고 2017나2030352 판결 [군부대 내 사유토지 매수청구]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8. 1. 26 선고 2017나203035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5가합57353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12. 15.

판결 선고 2018. 1. 26.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5가합57353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81,4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8.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7.

1.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할 때까지 매월 4,376,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토지매수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중 토지매수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삭제하고,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보충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보충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행의 "F" 앞에 "1971. 10. 1."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7행의 "M 토지의 소유권을"을 "D 토지, M 토지의 각 소유권을"로 변경한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7행의 "갑 2, 3, 4호증"을 "갑 2, 3, 4, 22, 23호증"으로 변경한다.
- 제1심판결문 제9쪽 제18행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를 "갑 제2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로 변경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 노정희

판사유현중

판사임영철

별지